

서울서부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100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0. 13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조동혁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5.2.7. 경매개시결정			배당요구종기	2025. 4. 22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신대철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21.4.28.~	330,000,000		2021.4.28.	2021.4.28.		
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권 자	2021.4.28.~2 023.4.28.	330,000,000		2021.4.28.	2021.4.28.	2025.4.3.	
<p><비고> 신대철: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권등기의 등기권리자 신대철의 권리를 승계(양수)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신청채권자임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(2023. 7. 21. 등기) 있음(임대차보증금 330,000,000원, 전입일 2021. 4. 28., 확정일자 2021. 4. 28.).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1002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62-44
자슬린하우스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3길 50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
5층 다세대주택, 근린생활시설
1층 65.55㎡
1층 12.32㎡
2층 164.6㎡
3층 164.6㎡
4층 164.6㎡
5층 153.61㎡
옥탑1층 16.88㎡(연면적제외)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5층501호
철근콘크리트구조 21.7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62-44
414.5㎡
대지권의종류 : 1, 1. 소유권
대지권의비율 : 1, 1. 414.5분의 14.54

감정평가액		305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5.11.18	305,000,000	30,500,000
2회	2025.12.23	244,000,000	24,400,000
3회	2026.02.03	195,200,000	19,520,000
4회	2026.03.10	156,160,000	15,616,000